

청주지방법원 2024. 3. 15 선고 2023가단4943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2. 16.

판 결 선 고 2024. 3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.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 1,400,000원 및 2023. 10. 1.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.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)

판사 김현룡

별지